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08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이인선·강선영·고동진

최은석 · 임이자 · 박수영

박충권 · 송언석 · 성일종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법률 제 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청구
	가 있는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
	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
	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